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2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최혜영·김병주·홍성국

오영환 • 이용우 • 임오경

김남국 • 신현영 • 정청래

장경태 · 주철현 · 임호선

이수진 • 이원택 • 김민철

한준호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9조제 4항제14호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4항제14호 중 "대합실"을 "대기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공항・여객부두・철도역・	14
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	
련 시설의 <u>대합실</u> ·승강장,	<u>대기실</u>
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	
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	
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	
15. ~ 26. (생 략)	15. ~ 26. (현행과 같음)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